

프랑스 방위사업 법제 비교연구

Study on French Defense Procurement Legal Framework

안동완*

Dongwan AHN*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defense procurement legal frameworks of France and South Korea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egislation. With the Ukraine war driving global military expansion, defense industries' importance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es has increased, highlighting the need for efficient legal foundations. Examining French instructions (IM 100, IM 1618), the Public Procurement Code, and South Korean legisl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related regulations), the research reveals structural differences. France employs sector-specific guidelines based on IM 100 and classifies defense procurement within its Public Procurement Code, while South Korea regulates all aspects through numerous regulations centered on a single law: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Ke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simplify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and establish better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rarely attempted domestically.

초 록

본 연구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법제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인 군비 확산의 추세 속에서 방위산업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IM 100, IM 1618 등 국방부 지시와 공공조달법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무기 도입 과정 측면과 조달 측면에서 양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는 국방부 투자에 관한 기본 지침인 IM 100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지침을 운영하고, 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조달법전 내에서 일반적인 방위 및 안보 관련 조달과 예외적 조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위사업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방위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 둘째, 국제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Key Words : 방위사업법(Defense Acquisition Law), 방위산업(Defense Industry),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법제 비교 연구(Comparative Legal Study)

* 안동완, 프랑스 파리2대학교 석사과정, 육군 대위(E-mail: andongwan@gmail.com)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군비 확산의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방위산업 수출 및 수입량이 크게 증대하였고, 특히 프랑스는 2014년~18년 대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출량이 47%증가하여 방위 산업 분야 수출량이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이는 기존 2위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 부진을 겪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프랑스의 방위산업 역량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기록이다. 수출 뿐 아니라 국내 구매에서도 프랑스의 국방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정부 조달에서 국방 분야 지출은 2022년, 2023년 각각 31%, 47%으로 타 정부 부처 조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²⁾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와 국내 방위산업 강화를 고집했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 시절 이후로 꾸준히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고수했는데 1972년 최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프랑스의) 국방이 외국의 산업적 제약에 종속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무기 분야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산업 역량을 유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며³⁾ 프랑스의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작성된 1994년 국방백서에서도 “유럽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산업 수단의 심층적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도 “프랑스는 협력을 맺을 수 있으나 필요 시 스스로 개발 및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존해야한다”며⁴⁾ 방위산업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2001년 프랑스의 징병제가 폐지된 이후 작성

된 2008년 국방백서에는 “(프랑스의 방위산업이)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유럽을 과학적, 기술적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었고⁵⁾, 2013년 국방백서에서는 또한 “방위산업이 프랑스의 전략적 독립성의 필수적 요소”⁶⁾라 표현하는 등 프랑스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에의 관심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국방백서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전략리뷰(Revue Nationale Stratégique)에서도 체계적인 방위산업 강화 방향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동력원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⁷⁾ 이는 2023년 제정된 군사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이하 LPM) 2024-2030에서도 육해공군의 장비 현대화 및 드론, 방공, 탄약,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 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LPM은 현행 헌법 34조⁸⁾에 따라 4~7년간의 국가 활동을 결정하고 공공재정의 다년간 방향을 정의하는 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중 하나다. LPM은 특히 국방 분야에 관한 법으로, 군사 지출에 할당되는 예산과 그 배분을 결정하여 장기적인 계약 및 장비의 주문과 납품을 가능하게 한다.⁹⁾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기존 20~30억 달러에 머물던 방위 산업 수출액 규모는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에 힘입어 2021년 약 73억 달러¹⁰⁾, 그리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¹¹⁾ 폴란드와 K-2 전차 등 450억

1) 스톡홀름세계평화연구소(SIPRI), “SIPRI YEARBOOK 2024 연감: 한국어 요약”, 『SIPRI, 2024, pp.10.
 2)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프랑스 재정경제부), 'Chiffres clés', <https://www.economie.gouv.fr/dae/chiffres-cles> (검색일: 2025.1.2.)
 3) Ministère de la défense(프랑스 국방부), Livre blanc sur la défense nationale 1972(1972년 국방백서), 정부 간행물, 1972 pp.44
 4) Ministère de la défense(프랑스 국방부), Livre blanc sur la défense 1994(1994년 국방백서), 정부 간행물, 1994, pp.115-117

5) Ministère de la défense(프랑스 국방부), Le 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2008(2008년 국방백서), 정부 간행물, 2008, pp.261
 6) Ministère de la défense(프랑스 국방부), Le 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2013(2013년 국방백서), 정부 간행물, 2013 pp.124
 7) Vie publique(프랑스 정부 정책 설명 공식 홈페이지), 'La politique de défense au travers des lois de programmation militaire',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69187-la-politique-de-defense-au-travers-des-lois-de-programmation-militaire> (검색일: 2025.2.18.)
 8) 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Les orientations pluriannuelles des finances publiques sont définies par des lois de programmation.
 9) Ministère des armées(프랑스 국방부),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2024-2030 : les 5 choses à savoir', <https://www.defense.gouv.fr/actualites/loi-programmation-militaire-2024-2030-5-choses-savoir> (검색일: 2025.2.19.)
 10) 장원준, 송재필, 김미정,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월간 산업경제, 2022.9., pp.23-24

달러에 달하는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연합으로 지켜지는 유럽시장에서도 큰 매출을 기록했다.¹²⁾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또한 수출 뿐 아니라 신규 무기 체계의 도입에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신규 무기체계 확보, 국방 관련 R&D 및 방산육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이전 16조 원 규모였으나, 2024년 17조 원대, 2025년에는 18조 71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도 무기 개발 및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¹³⁾ 이에 더해, 2022년 국방백서에서도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명시했듯¹⁴⁾, 방위산업에 대해 프랑스 못지않게 대한민국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방위산업은 이처럼 국가주도적인 산업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더 나아가 방위 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자국 방위산업에서의 거의 유일한 소비자이기에 방위산업체와 정부는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관계는 정부가 실시하는 방위사업 법제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방위산업(Base industrielle et technologique de défense)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¹⁵⁾이며 방위사업(Aquisition de la défense)은 방위력개선¹⁶⁾, 군수품 조달에 더해 방위산업육성을 포함¹⁷⁾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위산업 강국인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비교적 최근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큰 진보를 이룬 두 나라인 프랑스와 한국의 방위사업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 양국의 방위사업 법제 발전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방법

기존 대한민국의 해외 국방 관련 조달법제 및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는 특히 미국과 유럽 전반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약방식, 낙찰기준,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제제, 분쟁해결방법의 5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에의 탄력적인 계약방식 도입, 종합심사낙찰제도 활용, 지체상금면제 제도, 재량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었다.¹⁸⁾ 또한, 유럽연합의 안보 관련 법령의 발전 과정과 2009년 EU 방위조달지침¹⁹⁾의 탄력성, 공급보안, 정보보안 등 일반 공공 조달사업과 다른 특이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²⁰⁾ 뿐 아니라, 유럽법상 국방조달제도의 변화 과정과 적용범위, 예외사항, 입찰절차, 권리구제절차를 위주로 독일의 기존 사례와 2009년 EU 방위조달지침의 특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경쟁과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²¹⁾ 그리고 공공조달법 측면에서의 국방 및 안보조달, 안보상 긴급성 및 기밀성 고려사항, 기업 전문성의 고려사항 측면에서 같은 지침을 연구하여 국방 및 안보 조달 역시 경쟁법적 고려에 포함시키고 예외 사례에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하는 점에 대해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²²⁾ 더하여,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특성에 대해 비교한 연구도 있었고,²³⁾ 무역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법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²⁴⁾ 이 외에도, 법제 분석은 아니었

11) 하채림, “[2022 국방백서] 방산수출 173억달러…방산군수협력 체결 48개국(종합)”, 연합뉴스, 2023.2.16.

12) 장원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월간 KJET 산업경제, 2023.3. pp.13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방위사업청 ‘2025 예산안’”, 2024.9.9.,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3654&pWise=mSub&pWiseSub=H2#visualNews>”(검색일:2025.01.13.)

14) 대한민국 국방부, “2022년 국방백서”, 정부간행물, 2023, pp.43

15) 「방위산업」 표준대국어사전, 국립국어원, 2008

16) 방위력개선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에 따라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 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이다.

17) “방위사업법” 법률 20190호 (2024.2.6.일부개정) (이하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

18) 김대인, “국방조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스티스』 195호, 한국법학원, 2023, pp.35-69

19) Directive 2009/81/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3 juillet 2019

20) 박성원, “EU 방위조달지침의 개관”, 『선진국방연구』 제2권 제3호,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19, pp.53-70

21) 박재운,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개혁”, 『공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1, pp.393-419

22) 선지원,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법과정적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pp.45-71

23) 김종하,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분석, 그리고 그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3, pp.137-165

으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상대로 정책과 방위산업 현황을 확인한 연구 또한 존재했다.²⁵⁾ 이에 비해 프랑스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을 포함,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체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기에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한국 양 쪽 학계에서 현재까지 양국의 방위사업 관련 법제 비교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기존 대한민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을 하나의 특수한 조달로 대하여, 조달이라는 범위에 한정하여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의 주요 요소인 방위력개선사업은 소요와 추진방법의 결정부부터 조달 후의 양산·배치까지를 포함하는 신규·개량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다.²⁶⁾ 그러므로 방위사업을 조달이라는 단편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한다면 국가 혹은 군이 방위사업을 무기 획득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맞도록 어떻게 수행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수행 방식이 방위산업 상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달이라는 측면에서의 방위사업 법제에 더불어 방위력개선, 특히 신규·개량 무기체계 도입 상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절차 측면에서의 양국 방위사업 법제를 파악하고 각각의 특징을 확인,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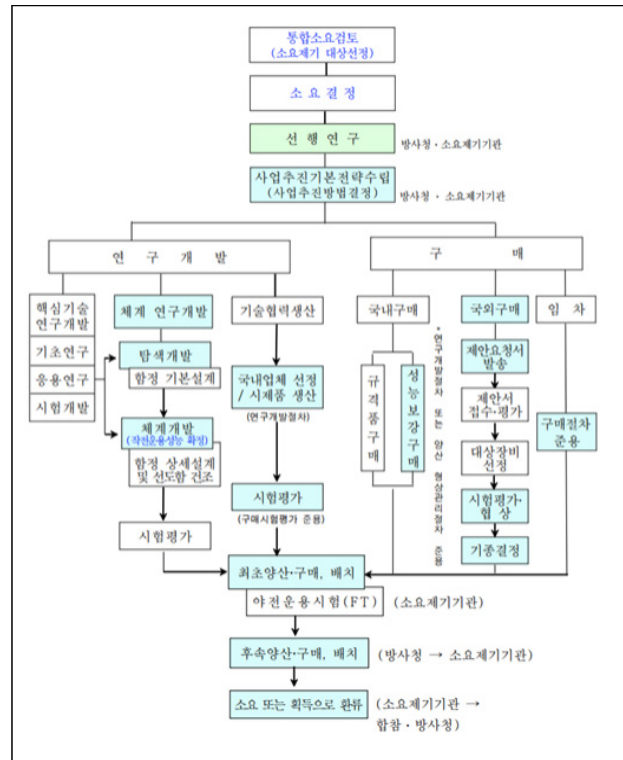
II. 방위사업 절차

2.1. 방위력개선 측면에서의 법제

2.1.1. 대한민국의 방위력개선

대한민국에선 방위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방위사업 전반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 중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²⁷⁾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 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해당 훈령에서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고²⁸⁾ 두 체계의 발전업무 또한 별도로 규정한다.²⁹⁾ 해당 발전업무는 아래의 절차도로도 표현되어 있다.³⁰⁾



〈그림 1〉 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표현된 절차도를 따라 보면, 무기체계의 경우 1)통합소요검토, 2)소요결정, 3)선행연구 4)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5)연구개발 혹은 구매 6)최초 양산·구매, 배치 7)후속양산·구매, 배치의 순서를 따른다.

소요검토와 소요결정과정은 대한민국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가 규정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사청 및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등 소요제기기관³¹⁾은 소요검토요청서를 매년 합동

24) 김진경, 류연승. “무역안보(전략물자) 법제 동향과 방산안보 시사점”.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24, pp.73-86.

25) 최기일, “이스라엘의 국방획득 추진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pp.71-88

26)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2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3007호(2025.1.10. 일부개정) (이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절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

29)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30)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3]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3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조(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

참모본부에 제출하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를 통해 한국 국방연구원으로부터 소요검토요청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차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각 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전력 등을 결정하며 해당 회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등의 기관이 참석한다. 선정된 소요제기 전력 중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에 위임된 소요 제기 전력은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가 규정한 절차대로 수행한다. 의결된 소요제기 전력에 대해서는 소요제기기관이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 결정 기관은 전력소요서를 작성한다.³²⁾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필요성, 2)운영개념, 3)작전운용성능, 4)전력화지원요소, 5)기술성숙도분석, 6)비용분석, 7)제조가능성 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개념연구를 합동참모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³³⁾ 전력소요서는 소요결정기관이 소요를 결정하는 문서로, 장기전력소요서, 중기전력소요서, 긴급전력소요서, 신속전력소요서로 구분된다.³⁴⁾

선행연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³⁵⁾로서 “소요가 결정된 경우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뜻한다.³⁶⁾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³⁷⁾의 심의를 거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해야 하나, 긴급한 무기체계등의 소요가 있거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하는 시범사업 혹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³⁸⁾을 따른다.

연구개발은 다시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나누는데,³⁹⁾ 함정 무기체계의 경우 별도로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후속함 건조단계로 나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는데, 이에 따르면 탐색개발단계에서는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기술 획득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제작·시험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입증하거나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한다.” 다음의 체계개발단계는 “소요결정 절차에 의하여 중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설계·시제품제작·시험평가를 통해 양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설계를 통해 체계의 통합성을 확인하고 부분품에서 체계에 이르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양산단계의 목표는 “체계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것”으로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 규정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특히 일반 무기체계, 함정 무기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나누어 규율하며,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기술협력생산과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⁴⁰⁾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 그리고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 또한 나누어 규율한다.

구매사업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나누며,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한다. 임차의 경우 1)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 2)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3)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

3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3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사전개념연구 수행)

3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35) “선행연구 수행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952호(2024.12.30. 일부개정) (이하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용어정의)

36)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

37)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38)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96호(2025.2.12., 일부개정) (이하 방위사업관리규정)

39)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2조(무기체계 연구개발)

4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우 4)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 5)소요량 및 전략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 등에 한하여 임차로 추진한다.

최초 및 후속 양산·구매, 배치 간에는 시험평가가 이루어진다.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요구 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개발시험평가, 각종 작전 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⁴¹⁾ 이러한 시험평가 이후로도 전력화단계 평가를 거치는데, 소요제기기관은 야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여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물량을 대상으로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 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 등의 사항을 포함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⁴²⁾ 그리고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배치 후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부대 임무수행과 관련된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력화평가를 수행한다.⁴³⁾ 이후, 방사청은 양산 중이거나 전력화되어 배치된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으나,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이 필요한 성능개량은 신규 무기체계 소요결정절차를 따른다.⁴⁴⁾

2.1.2. 프랑스의 무기 구매 사업

프랑스에서는 무기 구매를 포함하여,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지침은 국방부 투자 사업에 대

한 지시 100⁴⁵⁾(이하 IM 100)⁴⁶⁾이 규정한다. 그리고 IM 100을 근거로 하여 무기 사업 실행에 대한 지시 1618⁴⁷⁾(이하 IM 1618), 국방부 기반 시설에 관한 지시 1707⁴⁸⁾(이하 IM 1707), 그리고 국방부 내 방위 혁신에 관한 지시 2067⁴⁹⁾(이하 IM 2067)을 통해 각 사업 종류의 실행에 대해 IM 100에서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한다.⁵⁰⁾

IM 100은 국방부의 투자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그 수행 방안을 규정하는데,⁵¹⁾ 무기 사업을 포함하는 주요 사업(Opérations majeures)⁵²⁾은 부처투자위원회(Comité ministériel d'investissement, 이하 CMI)⁵³⁾를 통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의한다고 설명한다.⁵⁴⁾ CMI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며 합동참모의장(chef d'état-major des armées), 병기본부장(délégué général pour l'armement), 행정총국장(secrétaire général pour l'administration)이 상임위원으로 참석하고, 군 감사관(chef du contrôle général des armées), 재무국장(directeur des affaires financières), 투자상임사무국장(sécrétaire permanent aux investissements)이 상임으로 초청되며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 군 참모

45) Instruction N°100/ARM/CAB relative aux opérations d'investissement du ministère des armées 여기서 Instruction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시로 번역한다.

46) Instruction Ministérielle(부처 지시)의 약어 IM을 사용한다.

47) Instruction N°1618/ARM/CAB sur le déroulement des opérations d'armement

48) Instruction N° 1707/ARM/CAB relative aux infrastructures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49) Instruction N° 2067/ARM/CAB/CC6 relative à l'innovation de défense au sein du ministère des armées

50) 해당 지시들은 우리나라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상응하는 행정규칙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용어를 준용하여 지시 내 용어를 번역한다.

51) IM 100 Préambule : La présente instruction définit le cadre de référence pour la gouvernance et la conduite des opérations d'investissement du ministère des armées.

52) IM 100 Annexe I. Critères de classement des opérations comme majeures

53) 프랑스 부처투자위원회의 권한, 조직, 기능에 대한 시행령(Arrêté du 17 février 2010 fixant les attributions, la composition et le fonctionnement du comité ministériel d'investissement) 제1항에 따라, 부처투자위원회(CMI)는 국방부의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국방부 기구로, 무기 및 인프라 사업, 운영유지, 정보통신시스템, 국방 연구 분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투자 결정 관련 장관을 보좌한다.

54) IM 100 3. Gouvernance des opérations d'investissements et des politiques ministérielles d'investissement

4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9조(시험평가 구분)

4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0조(야전운용시험 일반지침)

4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3조(전력화평가)

4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성능개량)

총장 및 관련 기관장들이 참여할 수 있다.⁵⁵⁾ CMI는 최소 월 1회 개최되며, 위원회 구성원들은 담당 사업 책임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사전 검토 후 제공받는다. 이러한 사전 검토는 투자검토위원회(Commission d'examen des investissements)⁵⁶⁾의 의견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와 관련 재무 관련 부처 간 협조로 이뤄지는 부처간재무위원회(comité financier interministériel)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뤄진다.⁵⁷⁾

국방부의 투자 중, 특히 무기 사업에 관한 절차는 IM 1618을 따르며 해당 지시는 무기 사업수행 절차를 크게 준비(Préparation), 시행(Réalisation), 운용(Utilisation)의 3단계로 나눈다.⁵⁸⁾

준비 단계는 장비, 실질적 내용, 기한 및 가격 등 고려되는 무기 체계 사업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을 목표로 하며 3개 과정으로 이뤄진다.⁵⁹⁾ 우선 합동참모본부(État-Major des Armées)가 병기본부(Direction Générale de l'armement)⁶⁰⁾와 함께 작전운용성능 차원에서 소요(besoin)를 판단한다.⁶¹⁾ 다음 체계의 성능 구성요소와 개념을 설정하는 선행연구(Études préalables)이 수행⁶²⁾된 후 산업 조직 및 획득 전략(Organisation industriel - Stratégie d'acquisition)을 결정⁶³⁾한다. 작전운용성능 소요 결정(Expression du besoin opérationnel) 과정은 1)발생시키고자 하는 군사적 효과를 연계하여 작전 시나

리오에의 필요를 설명하면서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표현하고, 2)요구된 소요를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구성방식(architecture)을 연구하며, 3)각 구성방식(architecture) 내의 체계(système)들에 기대되는 기능, 성능 및 특성을 할당하되, 이때 하나의 체계가 여러 역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4)분석을 기반으로 표현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구성방식의 정의에 추적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목표를 설정한다. 선행연구(études préalables) 과정은 1)구성방식 전반이 제공할 만족도 분석, 2)기술, 규제, 환경 요구사항 및 정보 및 사이버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성방식 정의, 3)기존 혹은 미래 개발 체계와의 공유영역 설정, 4)최종 가격 산정, 5)주요 및 지원 체계 전반의 사양 기술, 6)일정, 기술, 산업, 운영 측면에서의 주요 위험성과 그에 대한 조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한다. 획득 전략 결정(Stratégie d'acquisition) 과정에서는 체계의 산업 및 기술적 해결책을 분석하고 가한 운영체계의 가치를 평가하여 하나 혹은 여러 체계의 획득 전략을 수립한다. 시공자와 공급자를 포함한 산업 조직을 연구하고 미래의 군사적 필요성 증가를 고려하여 1)특정 기반시설 등 관련 환경 요소 혹은 최초 유지보수를 포함하거나, 2)하청 및 공동계약 등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 등 넓은 범위의 계약 혹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준비 단계에서의 시행 단계로의 전환은 시행 개시 서류(Dossier de Lancement en Réalisation)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해당 서류는 체계의 개발, 생산 및 평가 전략 뿐 아니라 장비의 퇴역의 전반적인 계획을 기술한다. 준비 단계 이후에도 작전적인 소요나 기술 발전 등으로 시행 단계에서도 준비 단계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준비 단계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무기 구매가 진행 될 수도 있다.

시행 단계는 개발(Développement), 생산(Production), 구성 관리(Gestion de configuration), 평가(Qualification)의 4개 과정으로 이뤄진다.⁶⁴⁾ 개발(Développement) 과정은 계약으로 이뤄지며 비용, 기한 및 성능 측면 전반의 사항은 병기본부와 군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조 하에 관리된다.⁶⁵⁾ 생산(Production) 과정 또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담당 사업 팀이 가격, 성능, 기한의 측면에서 위험성을

55) IM 100 3.2.2. Composition.

56) IM 100 3.3. Commission d'examen des investissements.에 따라 부처투자검토위원회(Commission d'examen des investissements)에 1)장관의 결정 2)투자 일관성, 3)비용, 일정, 기술, 4)협력 및 공유 투자 우선 5)관계자 책임성 강화, 6)절차 단순화 7)위험 관리 8)사업 관리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투자 운영 진행 상황에 대해 연간 검토를 수행하고, CMI에 제출될 문서를 서류 완전성과 특히 재정 지속성 관련 사항을 평가한다.

57) IM 100 3.2.3. Fonctionnement.

58) IM1618 Préambule.

59) IM 1618 1. Préparation

60) 프랑스의 병기본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과 같은 성격의 기구로 군의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를 총괄한다. 최현수, "위로 병기본부장 訪韓... 프랑스 국방개혁 벤치마킹 주목", 『국민일보』, 2005.5.10., <https://www.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20050511100005934> (검색일: 2025.2.19.)

61) IM 1618 1.1. Expression du besoin opérationnel dans le cadre d'une approche capacitaire.

62) IM 1618 1.2. Études préalables à la phase e réalisation.

63) IM 1618 1.3. Organisation industrielle - Stratégie d'acquisition.

64) IM 1618 2. Réalisation.

65) IM 1618 2.1. Développement.

관리한다. 병기본부 책임 하에 품질과 장비 성능,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합치여부 또한 확인한다. 장비 공급이 시작되며 유지보수 정책 또한 확정된다. 교육 및 훈련용 시뮬레이터 또한 제작 및 인도된다.⁶⁶⁾ 평가 이후 적합성 판단을 받으면 구성 관리(Gestion de configuration)가 설정되는데 이는 전체 관리 주기 상에서 적합성 판단 시 정의되었던 요소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함이다.⁶⁷⁾ 평가(Qualification) 단계에서는 병기본부와 군에 의해 시험평가 계획이 세워진다. 최초 요구 사항에 제작 체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목표로 하며 특히 군의 책임 하에 기술 시험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산업 시험 및 실험 계획을 책임지고 개발 및 생산 장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한다. 다만 기성품으로 획득한 체계는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인으로 대체된다. 평가 단계가 끝나면 병기본부는 제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관리자가 제품을 인수한다.⁶⁸⁾

운용(Utilisation) 단계는 군으로 첫 장비 인도 이후 운용 개시 서류(Dossier de lancement de l'utilisation)의 승인을 통해 시작된다. 운용 개시 서류는 시행 단계에서부터 이어지는 종합적인 공사 외에도 비용 요소, 인도 일정, 유지보수, 전력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⁶⁹⁾ 해당 단계는 전력화(Mise en service), 유지(Soutien), 퇴역(Retrait de service)의 3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력화(Mise en service) 과정에서는 무기 체계 전체의 성능 발휘 평가, 운용 교리 검증 및 유지 체계의 확립, 인원 교육 그리고 조직, 장비, 환경, 기반시설의 기준을 확인하고 참모총장이 전력화를 결정한다.⁷⁰⁾ 유지(Soutien) 과정은 첫 생산 체계의 전력화부터 퇴역까지의 작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유지는 병기본부의 책임이나 최초 유지 기간 이후 책임은 군이 진다.⁷¹⁾ 퇴역(Retrait de service) 과정에서는 체계 사용자가 미리 퇴역 일정과 방법(양도, 파괴 등)을 준비하되,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⁷²⁾

66) IM 1618 2.2. Production.

67) IM 1618 2.3. Gestion de configuration.

68) IM 1618 2.4. Qualification.

69) IM 1618 3. Utilisation.

70) IM 1618 3.1. Mise en service.

71) IM 1618 3.2. Soutien.

이 외에도 해당 지시에는 특별 규정(Dispositions particulières)⁷³⁾이 있는데, 여기에는 협력을 통한 사업(Opérations en coopération)⁷⁴⁾, 복잡하거나 중요한 무기 사업(Opérations d'armement complexes ou à fort enjeu)⁷⁵⁾, 중요 정보통신 부품을 포함하는 무기 사업(Opérations d'armement incluant une part SIC importante)⁷⁶⁾, 작전상 긴급한 경우(Urgences opérationnelles)⁷⁷⁾ 적용 가능한 규정을 포함한다. 협력을 통한 사업의 경우 정책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특히 유럽 협력이 선호된다는 것, 복잡하거나 중요한 무기 사업은 경우에 따라 기존 3개 단계 내에서도 특별한 규정을 더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 중요 정보통신 부품을 포함하는 무기 사업의 경우 여러 체계의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작전상 긴급한 경우는 빠른 시일 내 중요한 소요에 대응해야 할 경우, 참모총장의 결정에 따르되 별도의 지시(instruction)에 따를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IM 1618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구체화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국방부 내 과학, 연구, 기술, 혁신에 관한 지시 190998⁷⁸⁾이 관련 사항의 정의, 관련 문서, 행위자와 책임, 절차, 적용 방법에 대해 규율했다. 그러나 2020년 IM 2067이 제정되며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IM 2067은 국방 혁신(innovation de défense)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된 혁신(innovation planifiée)의 차원에서 1)미래 군사 소요의 구체화를 위한 평가요소를 제공하고 운영 특성, 기술 사양, 비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작전 및 작전기술 연구(étude opérationnelles ou technico-opérationnelles), 2) 방위산업의 핵심 역량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국가 기술 전문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핵심기술 연구(étude de recherche et technologie)

72) IM 1618 3.3. Retrait de service.

73) IM 1618 4. Dispositions particulières.

74) IM 1618 4.1.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en coopération.

75) IM 1618 4.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d'armement complexes ou à fort enjeu.

76) IM 1618 4.3.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d'armement incluant une part SIC importante.

77) IM 1618 4.4. Urgences opérationnelles.

78) Instruction N° 190998/DEF/DGA/DS relative à la gestion des travaux relatifs à la science, recherche, technologie et innovation au sein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의 개념을 정의한다.⁷⁹⁾ 그러나 연구들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무기 도입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2.1.3. 양국 법제 비교

비교 검토 결과, 양국 법에서 명확하게 대비되는 점은 절차와 표현 상 차이였다.

프랑스의 IM 1618은 1)소요 결정, 선행연구, 산업조직으로 이뤄지는 준비단계, 2)개발, 생산, 구성관리, 평가로 이뤄지는 시행단계, 3)전력화, 유지, 퇴역으로 이뤄지는 운용단계의 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의 목적과 절차별 주요 평가사항을 서술한 것에 그치는데 비해, 대한민국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1)통합소요검토, 2)소요결정, 3)선행연구 4)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5)연구개발 혹은 구매 6)최초 양산·구매, 배치 7)후속양산·구매, 배치의 순서를 정의하고 각 순서의 목적, 책임자, 대상, 방법 등이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의 경우나 신속소요 혹은 시범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절차를 별도로 규율한다.

절차 상 표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한민국은 연구개발이나 구매로 추진방법을 구분하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 또 프랑스는 장비의 퇴역까지를 사업의 일부로 명시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표현 상, 프랑스의 IM 100은 CMI의 구성인원과 목적, 대략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IM 1618은 특별 규정에 따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단일 절차를 적용한다. 그리고 IM 2067도 연구개발을 일부 다루고 있지만 명확한 절차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사업 대상과 도입방법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 프랑스보다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전력발전업무훈령이 프랑스의 지시들의 표현이 비해 구체적이라는 평가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국방에 관한 사항 중 많은 부분이 대외비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부서나 기관 내부적으로는 어떤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IM 100을

비롯한 그 하위 지시들은 언제까지나 공공에 개방된 법률로서 무기 도입 절차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양국의 법제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 비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화한 것이다. 해당 표에서는 사업의 실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절차가 가급적 나란히 표현되도록 구성하였다.

〈표 1〉 양국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비교

대한민국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프랑스 : 무기 사업 실행에 대한 지시(IM1618)	
통합소요검토 및 소요 결정		소요 판단 (Expression du besoin opérationnel)	
선행연구		선행연구 (Étude préalable)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산업조직 및 획득 전략 결정 (Organisation industrielle - Stratégie d'acquisition)	
연구개발	구매	개발 (Développement)	
탐색개발	국내	국내	생산 및 구성관리 (Production & Gestion de configuration)
체계개발		임차	평가 (Qualification)
최초 양산·구매, 배치		전력화 (Mise en service)	
후속 양산·구매, 배치		유지 (Soutien)	
		퇴역 (Retrait de service)	

2.2. 조달 측면에서의 법제

2.2.1. 대한민국의 군수품 조달

대한민국에서 군수품의 조달은 방위사업청, 각 군 그리고 조달청이 실시한다.⁸⁰⁾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나, 군수품의 특성에 따라 각 군이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한다. 특히 1)군수품을 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군 정비부대에서

79) IM 2067 1.2. Modes d'action

80) 방위사업법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국방규격⁸¹⁾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 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은 각 군에서 군수품을 직접 조달 할 수 있다. 또한 전력지원체계 내 1)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 2) 전투지원물자, 3)의무지원물품의 경우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조달할 수 있다.⁸²⁾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 운영사업의 국·내외 조달관리, 원가관리 업무절차와 계약 사무처리 절차”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⁸³⁾이 규정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주요 조달업무 절차를 집행준비 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눈다.⁸⁴⁾ 집행준비 단계는 1)입찰참가 자격의 등록, 2)조달계획서의 접수처리, 3)조달판단 및 집행방법 결정, 4)예정가격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집행 단계는 1)입찰공고 및 협상 요청, 2)입찰참가 신청 및 접수, 3)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고 사후관리 단계는 1)계약이행 관리 2)선금의 지급, 3)계약이행의 감독(감독기관의 소관), 4)계약이행의 확인·검사(검사기관의 소관), 5)납품·수납, 6)대가의 지급, 7)사업·예산결산 자료의 작성, 8)보중·사후관리 9)기록 및 보고로 구성되며 각각의 과정에 대한 책임자, 대상, 방법 등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내의 각 규정에서 보다 자세히 규율한다.

2.2.2. 프랑스의 방위 및 안보 관련 조달

프랑스의 경우 방위사업은 공공조달(marchés publics) 중 하나로 공공조달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 및 안보 관련 조달(Marchés de défense ou de sécurité, 이하 일반적인 방위 조달) 및 예외적 조달(Autres marchés)에서의 방위 조달로 일반적인 조달과는 별도로 취급한다.⁸⁵⁾

공공조달법전은 일반적인 방위 조달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국가(Etat)나 공공기관(établissements publics)이 체결하는 조달이라 하며, 여기에는 장비와 관련된 사항과 용역에 관한 사항이 있다. 장비에 관한 사항은 “무기, 탄약, 또는 군사 장비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장비 및 해당 장비의 부품, 구성 요소 또는 하위 조립품”으로 정의하며, “이 장비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처음에는 민간 용도로 설계되었다가 군사적 목적에 맞게 개조된 것일 수 있다.”며 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한다.⁸⁶⁾ 또한 “해당 장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 물품 공급 및 용역”으로 관련된 활동 또한 정의하는데, “이는 장비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또는 일부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 시험 장비, 또는 특정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항의 적용을 위해, 장비의 수명 주기는 연구개발, 산업 개발, 생산, 수리, 개량, 개조, 유지보수, 물류, 교육, 시험, 퇴역, 해체 및 폐기와 같이 장비가 거칠 수 있는 모든 연속적 단계를 의미한다.”고 명시한다.⁸⁷⁾

일반적인 방위 조달과 별개로, 예외적 조달 내에서도 별도로 방위 조달을 규정한다. 특히, “무기, 탄약 또는 전쟁 장비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UE) 제

8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개정)에 따른 군수품 규격

8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에 따라 전투지원장비는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물자는 방탄류, 피복·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유도탄물자, 전기·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의무지원물품은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을 뜻한다.

83)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87호 (2025.1.2. 일부개정) (이하 군수품조달관리규정)

8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9조(계약업무 절차 등)

85) 공공조달법전(CCP)의 2편(Partie)는 총 7개 권(Livre)로 구성되는데, 이 중 1권은 일반적인 조달(Dispositions Générales), 3권은 안보 및 방위 관련 조달(Marchés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5권은 예외적 조달(Autres marchés publics)에 대해 규정한다. 1권의 일반적인 조달은 사실 상의 민간 분야 조달이며, Autres marchés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직역하면 “기타 조달”로 표현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서의 조달을 뜻하므로 “예외적 조달”로 표현하였다. 또한 5권의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과 3권의 방위 조달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3권의 방위 조달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위 조달”로 표현한다.

86)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1113-1-1

87)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1113-1-3

346조의 의미에서 국가의 주요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예외적 조달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특히 극도로 높은 기밀성을 필요로 하거나 신속한 획득이 요구되는 구매, 프랑스의 파트너 및 동맹국에게 제공된 군사 장비와 탄약의 신속한 교체, 유럽 대륙이나 해외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과 위기에서 신속히 교훈을 얻기 위한 군사 장비의 획득, 또는 기술 진보의 속도로 인해 매우 신속한 획득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구체화한다.⁸⁸⁾ 또한, “특히 매우 높은 기밀성을 요구하는 공사, 물품 공급 및 용역에서 국가의 주요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 조달이 허용된다고 규정하며 “국경 보호, 테러 또는 조직범죄와의 싸움, 암호장비(cryptage) 관련 구매 또는 내무부 및 군대에 의해 수행되는 기타 민감한 활동과 관련된 구매”와 같이 관련된 활동 또한 예외적 조달에 해당한다고 구체화한다.⁸⁹⁾ 이 외에도 연구개발⁹⁰⁾, 정부 간 거래⁹¹⁾, 국제기구에 위탁된 조달⁹²⁾, 국제 협력 프로그램⁹³⁾의 경우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방위 조달과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2009년 EU 방위조달지침의 적용유무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인 방위 조달의 경우 공개 및 경쟁의 의무와 2009년 EU 방위조달지침을 준수를 명시하지만,⁹⁴⁾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의 경우는 이러한 공개, 경쟁의 의무와 EU방위조달지침의 적용을 명시하는 바가 없다. 특히 L2512-1조의 3항과 4항에서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UE) 346조 1항에서 규율하는 “무기, 탄약 및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거래와 관련된 자국의 주요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방위 조달과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은

실질적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외적 조달의 경우 1)계약금 지불 기한⁹⁵⁾, 2)하도급 관련 조건⁹⁶⁾, 3)계약의 해지 조건⁹⁷⁾, 4)분쟁해결 관련 사항⁹⁸⁾에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는데, 이는 일반적인 방위조달의 절차가 1)조달 준비(Préparation du marché)⁹⁹⁾, 2)조달 절차 선정(Choix de la procédure de passation)¹⁰⁰⁾, 3)조달 절차 시작(Engagement de la procédure de passation)¹⁰¹⁾, 4)입찰 참가 신청(Phase de candidature)¹⁰²⁾, 5)입찰(Phase d'offre)¹⁰³⁾, 6)절차 종료(Achèvement de la procédure)¹⁰⁴⁾, 7)조달 실시(Exécution du marché)¹⁰⁵⁾ 등으로 구성되어 절차의 시작부터 실행까지 상세하게 규정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처럼 일반 조달, 일반적인 방위 조달 그리고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은 적용 기준이나 그 과정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에 어떤 하나의 조달 내에 이들이 섞여 있을 때 어느 체계를 따르는 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조달과 일반적인 방위 조달이 공존할 때, 이는 일반적인 방위 조달의 규정을 따르고,¹⁰⁶⁾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이 포함될 때에는 예외적 방위 조달의 규정을 따른다.¹⁰⁷⁾

이 외에, 법률의 성격을 갖지는 않으나, 관련 계약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문서를 병기본부에서 공시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무기류 공통행정조항집¹⁰⁸⁾과 병기본부 구매 조항집¹⁰⁹⁾이 있다. 무기류 공통행정조항집

88)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15-1-3

89)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15-1-4

90)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12-5

91)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15-1-10

92)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15-1-5

93)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15-1-8,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경우에 한한다.

94)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313-3

95)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21-1

96)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21-2

97)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21-3

98)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521-4

99)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1장

100)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2장

101)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3장

102)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4장

103)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5장

104)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8장

105)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2편 3권 9장

106)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000-4조

107) 프랑스 공공조달법전(CCP). L2000-3조

108) Cahier des Clause Administratives Communes(C.A.C.) Armement

109) Clausiers ACH DGA

은 계약 시 반드시 계약 서류 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모든 방위 조달 계약과 협약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격, 실행과 기한, 수령, 계약의 해지, 지적재산권 등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¹¹⁰⁾ 그리고 병기본부 구매 조항집은 공공조달법전 제2편 제3권 또는 제5권에 해당하는 방위 조달을 위한 계약의 표준 조항들을 해설한 모음집으로 여기에 나타난 표준 계약 조항들은 프랑스 병기본부가 진행하는 각각의 방위 또는 보안 공공 계약에 들어가는 특수 행정 조항집¹¹¹⁾을 작성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¹¹²⁾

2.2.3. 양국 법제 비교

비교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상이함에도 실질적인 실행 절차상으로는 양국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법령의 체계가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방위사업을 공공조달법전의 규율 범위 내에 포함하되 그 안에서 일반적인 조달과 다른 조달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조달을 규율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방위사업법 및 하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및 기타 관련 법령, 그 중에서도 특히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이 방위사업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또한 프랑스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UE)과 유럽연합 지침(Directive)에 따라 공개 및 경쟁의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방위 조달과 공개 및 경쟁의 의무가 없는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을 나눈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방위사업 조달 상 특수한 원칙을 의무화하거나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국제 조약 또는 협약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무기

체계 구매사업으로 구분하는데¹¹³⁾,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구매사업 모두 공고 및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¹¹⁴⁾ 여기에 더해 방위력개선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군수품에 대해서도 공개와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¹¹⁵⁾

이러한 공개와 경쟁의 원칙을 명시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규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예외적 조달과 비슷한 성격의 대한민국의 조달은 비닉 사업이 있다.¹¹⁶⁾ 추진 과정이나 획득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비공개 사업인 비닉 사업은 사업명이나 예산 편성 및 심의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명확한 선정 기준 또한 알려진 바 없다. 비닉 무기체계는 국가안보상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로 국가에서 개발을 독점하기 때문이다.¹¹⁷⁾ 이처럼 비닉사업은 프랑스의 예외적 조달과 같이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해 그 대상이나 과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율된 바 없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둘을 면밀히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프랑스의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과 대한민국의 비닉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상황에서의 군수품 조달 시 절차를 다음의 표를 통해 표현하였다. 여기서,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절차 상 크게 주요하지 않은 단계(군수품조달관리규정 상 사업·예산 결산 자료의 작성 등)은 제외하고 조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한 절차가 병기되도록 일부 절차를 단순화하여 절차 비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13)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11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공개 및 경쟁이 원칙임을 보여 주고, 제125조(구매절차)에서는 국내 구매 시, 제126조(구매절차)는 국외 구매 시 공개와 경쟁이 원칙임을 보여준다.

115)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군수품 조달의 원칙)은 경쟁의 원칙을, 제23조(조달 관련 정보 공개)은 공개의 원칙을 담고 있다.

116) 정승임, “홍길동’ 된 문 대통령과 국방부… 왜 ‘현무-4’라고 못 부르냐”, 『한국일보』, 2020.08.18.

117) 임채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2주년]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 강화로 미래전 선도한다”, 『국방일보』, 2022.08.05.

110) 프랑스 국방부 홈페이지, ‘CAC Armement’, <https://armement.defense.gouv.fr/achats-darmement/documentation-et-referentiels-pour-les-achats/cac-armement> (검색일: 2024.11.12.)

111) Cahier des Clauses Administratives Particulières

112) 프랑스 국방부 홈페이지, ‘Clausier DGA’, <https://armement.defense.gouv.fr/achats-darmement/documentation-et-referentiels-pour-les-achats/clausier-dga> (검색일: 2024.11.23.)

〈표 2〉 양국 군수품 조달 절차 비교

대한민국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프랑스 : 공공조달법전(CCP)
입찰참가 자격 등록	조달 준비
조달계획서 접수처리	(Préparation du marché)
조달 판단 및 집행방법 결정	조달 절차 선정
예정가격 결정	(Choix de la procédure de passation)
입찰공고 및 협상 요청	조달 절차 시작
	(Engagement de la procédure de passation)
입찰참가 신청 및 접수	입찰 참가 신청
	(Phase de candidature)
	입찰
	(Phase d'offre)
계약 체결	절차종료
	(Achèvement de la procédure)
계약이행 관리	
선금의 지급	조달 실시
납품·수납	(Exécution du marché)
대가의 지급	
보증·사후관리	

Ⅲ. 시사점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방위사업 법제를 정부가 실시하는 무기 구매의 전반적인 과정 측면과 공공조달이라는 측면이라는 두 관점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법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3.1. 법제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

프랑스는 국방부의 투자에 대한 전반을 규율하는 IM 100이라는 상위 지침이 존재하고 그 하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무기 도입 사업은 IM 1618, 군사 분야 건설 사업은 IM 1707, 연구 개발 및 혁신 분야는 IM 2067 등 지침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해당 지침들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보다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조달법전 하나의 법전 내에서 다양한 성격의 방위조달이 다뤄진다. 이와 별도로 계약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세한 사항인 계약일반조건은 병기본부의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사실상 방위사업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과 이를 근거로 하는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달리, 절충교역(118), 수출입 심사(119) 등 방위사업 자체에 대한 절차 뿐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총체적인 사항을 방위사업법과 그 하위법들을 통해 모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그럼에도, 방위사업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시행령은 2개, 시행규칙은 무려 53개에 이를 정도로 관련 법제가 복잡하다.¹²⁰ 특히 이 중에는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¹²¹,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¹²²,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¹²³을 비롯한 방위사업청에 적용되는 인사 규정이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방위사업 자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전력발전업무훈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방위사업의 수행을 두고 각각 방위사업청, 국방부 전력정책과의 입장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율하는 등 그 수행 과정을 하나의 법령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이를 정리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선 방위사업법과 별도로 하여 방위사업청이 조직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법 하위법 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방위사업에 연관된 수행 기관의 사무처리 기준을 각 기관이 각각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방위사업의 수행 방법이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는 점이 오히려 유연성을 떨어지게 하는 문제도 있다. 최근 사례로 예를 들면, SNT 다이내믹스의 K2 전차 파워팩의 국산화 과정에서 변속기 개발 중 320시간 연속 운용이라는 시험평가 기준에서 307시간(96%)를 달성했으나 통과는

118) “절충교역 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943호, (2024.10.29., 일부개정) (이하 절충교역 지침)

119)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방위사업청훈령 제884호 (2024.12.18., 일부개정) (이하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1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도 방위사업법 상하위법’, <https://www.law.go.kr/lsStmdlInfoP.do?lsiSeq=259623&ancYnChk=> (검색일:2025.2.23.)

121)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9283호 (2006.1.26., 제정)

122)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465호(2018.11.28., 일부개정)

123)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방위사업청예규 제891호, 2023.12.27. 일부개정)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오히려 튀르키예에서 같은 변속기의 성능을 인정, 2023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부터 제46조의5(계약의 변경)까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을 일부 유연하게 변경한 바 있다.¹²⁴⁾ 이처럼 법제가 과도하게 구체화되어 있을 경우 경직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술 수준의 발달에 따라 기준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사업 별 특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사업 진행 간 일부 재량이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제 상 유연성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2. 국제 협력 사업 강화

프랑스는 공공조달법전 내에서는 국제기구에 위탁된 조달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은 국가의 주요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하게 다루는 예외적 조달 내 포함하고, IM 1618 내에서는 협력을 통한 무기 도입 사업이 정책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면 우선시 된다고 명시할 정도로 국제 협력을 통한 사업을 중시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¹²⁵⁾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4항의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문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조(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의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한다는 조문만이 국제 협력 사업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전략리뷰 2022¹²⁶⁾에서도 보여주듯 유럽 내에서 국제 방위산업 협력의 허브로서 기능하려 하는데,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 관

련 법제에도 국제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대한민국 또한 아시아 지역 내 방산협력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가져 향후 방산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방위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기에 본 연구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를 신규 무기도입의 전반적 과정 측면과 조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프랑스의 IM 100, IM 1618 등 국방부 지시와 공공조달법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법령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양국의 무기 도입 및 조달 관련 법제의 구조, 특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는 국방부 모든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IM 100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무기 도입(IM 1618), 건설(IM 1707), 혁신 및 연구개발(IM 2067) 등의 분야별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조달법전 내에서 일반적인 방위 조달과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 조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위사업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방위사업의 전 과정 뿐 아니라 조달 분야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구 결과, 두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지시를 통해 방위사업을 규율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관련 법제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어 오히려 복잡하고 경직성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에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둘째, 프랑스는 정책적으로도 국제 협력 사업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법제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에 국제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

124) 안동완, “K2전차 변속기 개발 일찌감치 끝냈는데…규정 하나 못바꿔 한참 뒤에 국산화”, 『매일경제』, 2025.2.10.

12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9948호(2024.1.9., 일부개정)

126) Revue nationale stratégique 2022

리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대한민국 방위사업 관련 법제 비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공공조달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공개된 법령과 문헌만을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실제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비공개 지침이나 관행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방위사업 법제를 절차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거나, 프랑스 뿐 아니라 또 다른 비교 분석의 의미가 있는 다양한 국가들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법제의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나, 비닉사업이나 예외적 조달에서의 방위조달 등을 포함한 국가중요사업에 대해 비교 연구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대인. “국방조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스티스』 제195호, 한국법학원, 2023, pp.35-69.
- 2) 선지원.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법과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pp.45-71.
- 3) 장원준, 송재필, 김미정.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2022.
- 4) 장원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3.
- 5) 정승임. “‘홍길동’ 된 문 대통령과 국방부… 왜 ‘현무-4’라고 못 부르나”. 『한국일보』, 2020. 8. 18.
- 6) 최현수. “뤼로 병기본부장…프랑스 국방개혁 벤치마킹 주목”. 『국민일보』, 2005. 5. 10.
- 7) 하채립. “[2022 국방백서] 방산수출 173억달러…방산군수협력 체결 48개국(종합)”. 『연합뉴스』, 2023. 2. 16.
- 8) 임채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2주년]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 강화로 미래전 선도한다”. 『국방일보』, 2022. 8. 5.
- 9) 박성완. “EU 방위조달지침의 개관”. 『선진국방연구』 제2권 제3호,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19, pp.53-70.
- 10)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개혁”. 『공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1, pp.393-419.
- 11) 김종하,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분석, 그리고 그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3, pp.137-165
- 12) 김진경, 류연승. “무역안보(전략물자) 법제 동향과 방산안보 시사점”.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24, pp.73-86.
- 13) 최기일, “이스라엘의 국방획득 추진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pp.71-88
- 14) SIPRI. SIPRI YEARBOOK 2024 연감: 한국어 요약. SIPRI, 2024.
- 15) Ministère des armées.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2024-2030 : les 5 choses à savoir”. <https://www.defense.gouv.fr/actualites/loi-programmation-militaire-2024-2030-5-choses-savoir> (검색일: 2025. 2. 19).
- 16)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Chiffre clés”. <https://www.economie.gouv.fr/dae/chiffres-cles> (검색일: 2025. 1. 2).
- 17)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défense au travers des lois de programmation militaire”.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69187-la-politique-de-defense-au-travers-des-lois-de-programmation-militaire> (검색일: 2025. 2. 18).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체계도 방위사업법 상하위법”. <https://www.law.go.kr/lsStmdInfoP.do?lsiSeq=259623&ancYnChk=> (검색일: 2025. 2. 23).
- 19) “방위사업법”, 법률 제20190호(2024. 2. 6. 일부개정)
- 2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9948호(2024. 1. 9. 일부개정)
- 2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3007호(2025. 1. 10. 일부개정)
- 22)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96호(2025. 2. 12. 일부개정)
- 23)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87호(2025. 1. 2. 일부개정)
- 24)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프랑스 공공조달법전], 2019. 4. 1. 제정.
- 25) Instruction N°100/ARM/CAB relative aux opérations d'investissement du ministère des armées [국방부 투자 사업에 대한 지시], 2022. 6. 1.
- 26) Instruction N°1618/ARM/CAB sur le déroulement des opérations d'armement [무기 사업 실행에 대한 지시], 2023. 3. 15.
- 27) Instruction N° 2067/ARM/CAB/CC6 relative à l'innovation de défense au sein du ministère des armées [국방부 내 방위 혁신에 관한 지시], 2020. 9. 22.
- 28)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정부 간행물, 2023.
- 29) Ministère de la défense. “Livres blancs sur la défense nationale 1972”. 정부 간행물, 1972.
- 30) Ministère de la défense. “Livres blancs sur la défense nationale 1994”. 정부 간행물, 1994.
- 31) Ministère de la défense. “Le 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2008”. 정부 간행물, 2008.
- 32) Ministère de la défense. “Le 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2013”. 정부 간행물, 2013.